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5 및 제37조의6으로 하고, 제37조의4를 제37조의2로 하며,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5(중전의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교육기한”을 “교육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교육기한”을 “교육기간”으로, “통지에 같음한다”를 “통지를 대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르고, 운전자”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로,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6(중전의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중 10의3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제1항·제2항· 제4항·제5항 및 제53 조의5

별표 39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표 (주) 제2호 중 “제11호와 제12호”를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로 한다.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130,000 (140,000)	20	104,000 (112,000)
		승용자동차등	120,000 (130,000)	20	96,000 (104,000)
11의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90,000 (100,000)	20	72,000 (112,000)
		승용자동차등	80,000 (90,000)	20	64,000 (72,000)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중전의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중전의 제2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9 제11호·제11호의2·제12호 및 같은 표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3조의5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 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5]

보호자 동승표지(제37조의3 관련)

1. 보호자 동승표지



2. 제작 방법

가.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연월
20 . . .

성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	/	/	/	/	/	/	/	/	/
	여부										
	월일	/	/	/	/	/	/	/	/	/	/
	여부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월일	/	/	/	/	/	/	/	/	/	/
	여부										
	월일	/	/	/	/	/	/	/	/	/	/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통지서

1. 성명: _____

2. 생년월일: _____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기간	20 . 1. 1. ~ 12. 31.
교육장소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육장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원하는 일시에 교육 신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제 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운전자용 동승보호자용)

교육필
압인

교육 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수 과정	과정명		이수일자	
차기 교육기간	년 1월 31일 ~ 년 12월 31일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
로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도로교
통공단
로고

(주)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용: 105mm×152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유의사항

1.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에 안전교육 확인증을 비치해야 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려는 경우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제출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의 서식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지서 및 확인증의 서식을 정하고, 경찰서장이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의 감경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 2. 조사기관 의견서
 - 3.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